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환된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인용 조항의 현행화(안 제40조, 제41조,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제1항 및 제3항이 제70조의 제2항 및 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당초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나. 과태료의 기준 신설(안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의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1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70조제2항”으로,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5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70조제2항”으로,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0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70조제2항”으로,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5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70조제2항”으로,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로 한다.

제41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1호”를 “법 제70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2호”를 “법 제7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3항제1호”를 “법 제70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4호”를 “법 제70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5호”를 “법 제70조제3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6호”를 “법 제70조제3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1호자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8호”를 “법 제70조제3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9호”를 “법 제70조제3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10호”를 “법 제70조제3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0조제2항제12호”를 “법 제70조제3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1) · 5) · 7) · 8) · 9)”를 “1) · 7) · 9) · 10) · 1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4호				
가)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10만원	20만원	40만원	40만원
나)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80만원
다)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30만원	60만원	120만원	120만원
라)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 제4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경우	법 제70조 제4항제2호의2	1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4)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5)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법 제70조 제3항제1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5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가)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1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나)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다)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라)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0조 제3항제11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법 제70조 제3항제1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70조 제3항제11호				

보세운송을 한 경우					
가)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 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10만원	20만원	40만원	40만원
나)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 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80만원
다)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 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30만원	60만원	120만원	120만원
라)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 제3항제12호				
가)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1일 이 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10만원	20만원	40만원	40만원
나)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80만원
다)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 이 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		30만원	60만원	120만원	120만원
라)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출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 제4항제3호				
가)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1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1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1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1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나)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액	액의 1.5배	액의 2배	액의 2배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1.5배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2배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2배
다)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1.5배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2배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2배
	40만원	4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마)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1.5 배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2 배 50만원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2 배 50만원
		5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	50만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1.5 배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2 배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 에 해당 하는 금 액 중 적은금 액의 2 배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법 제70조 제1항제3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1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 제4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 ----- -----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u>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u>	21. <u>법 제70조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u>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u>	15. <u>법 제70조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u>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	⑦ -----

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매각으로 한정한다)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권한은 제외한다.

1. ~ 19. (생략)

20.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⑧ (생 략)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14. (생 략) 15. <u>법 제70조제1항</u>,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⑩ · ⑪ (생 략)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법 제70조제2항</u>----- <u>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u>----- -----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u>제4항</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연 락 처	(044) 203 - 4631